

입법동향

방송분야 입법 동향(2013년~2014년)\*

New Development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Korea 2013~2014

정인영(Cheong, In-Young)\*\*

1. 들어가며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 관련 업무의 관할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된 이후 근 2년간 방송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져왔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거쳐 입법적 결실을 맺었고, 전 부처 차원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맞추어 크고 작은 규제들이 완화 또는 폐지되었으며, 시청자 보호 내지 불편 경감 등을 위한 입법적 개선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순으로 근 2년간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 순번된 하위법규 제·개정은 상위법의 목차에 포함시켰다.

2. 주요 법률 개정 사항

1) KBS, EBS 결산 승인 절차 개선

종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감

사원 검사 결과를 국회 승인에 반영하지 못해 감사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승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sup>1)</sup> 이에 2013. 8월 결산의 국회 승인 전에 감사원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결산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방송법」 제59조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3조가 개정되었다(2013. 8. 13 시행, 14년도 결산부터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1월 「방송법 시행령」 제37조의2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로 ① 합계잔액시산표<sup>2)</sup>, ②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③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규정하였다(2014. 11. 29 시행).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

1)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주무기관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결산을 승인하고 감사원에 제출하는 절차와 유사한 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 승인 등을 통해 감사원 검사 결과를 예산 절차에 환류(feedback)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나 KBS의 경우 예산과 관련된 법적 규율이 없어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였다.  
2) 결산 관련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 과목(수입, 비용, 자산, 부채, 자본 등의 합계와 잔액을 하나의 표에 나타낸 문서이다. 결산을 구성하는 계정과목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결산 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Administrative Officer,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 이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

〈KBS, EBS 결산 관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EBS는 방통위·국회에 결산 제출(2월) → 국회 승인(6월) → 감사원 검사(9월)</li> <li>-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li> <li>-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EBS는 방통위에 결산 제출(2월) → 감사원 검사(6월) → 국회 승인</li> <li>-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li> <li>-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li> </ul>

공정성특별위원회<sup>3)</sup>에서 2013년부터 협의를 지속한 결과 2014. 5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소유한 문화방송(MBC)의 임원(이사·사장 등) 선임과 그 내부의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규율을 일컫는다.

종래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와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간 이사회 이사의 추천비율을 법률에 명시한 다거나<sup>3)</sup> 방송사 사장 선임 시에는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규정하거나 지상파와 중편채널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임원 결격사유 강화나 이사회 회의 공개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되었다. 비록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출범 당시의 기대에 비해 논의의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래 최초로, 공론의 장에서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보였다고 볼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술한다.

① 공영방송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공영방송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경영진에서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KBS의 이사과 사장(「방송법」 제48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MBC 사장(「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0조의2), 그리고 EBS 이사과 사장(「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sup>4)</sup>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2014. 8. 29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은 2014. 9. 4부터 시행) 기존에는 임원 선임 직전에 정당을 탈퇴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정당원,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문·고문, 대통령인수위원을 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MBC 사장 추천에 관한 규율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고 MBC에 대한 권한 행사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았다.<sup>5)</sup> 따라서 MBC 사장은 「방송법」 제13조 제3항

3) 현재는 KBS 이사는 방통위에서 전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1/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통위에서 전원 임명하고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70%)와 정수장학회(30%)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EBS 이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원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통위의 동의를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4) 법무부는 국민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타 법률에 따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에 규정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해 왔다(2014. 3월,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령 정비 협조요청’, 법무부 상사법무과-946호 등). 그래서 법무부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결격사유를 위 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법률안의 인번호 제1908975호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경력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합리하게 긴 제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영방송 임원 결격사유 관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li> <li>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li> <li>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li> <li>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li>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 위임)</li> <li>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ol>

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대표자의 결격사유(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사장 선임 과정이 공법 영역으로 포섭되었고 KBS 사장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높게 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8월 「방송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결격사유 제5호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

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②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개정되었다(「방송법」 제50조, 「국회법」 제65조의2, 「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한 것과 더불어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가 요구되는 KBS 사장의 경우 그 선임과정에서 국회가 직접 검증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공개 의무화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등을 위해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EBS 이사회의 회의 공개가 의무화되었다(「방송법」 제46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이사회는 ① 다른 법

5)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MBC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예·결산 승인권 등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다출자자로서 주주총회에서 70% 의결권을 지니므로 현실적으로 MBC의 업무계획이나 결산을 보고 받고 중요 경영사항(자회사 합병, 결산 등)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다.

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의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회의의 공개나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하였다. 특별히 이사회가 의견청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법률에서 회의의 공개의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직접 방청만 허용되는지(별도의 방청실에서의 방청 또는 인터넷 중계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지), 회의의 공개 의무에 회의록이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는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방송시장의 유료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지역방송이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 5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2014. 12. 4 시행).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법 제2조). 지역MBC나 OBS, TJB와 같은 지역민방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통위는 매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연도별 지원계획, 재원 배분 및 광고·편성·규제체계 개선방안 등이 담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법 제7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등

주요 정책의 심의, 지역방송 허가·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상임위원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지역방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법 제9조~제11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종전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원(5인 → 9인 이내)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법률 시행을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2014. 11. 25 국무회의 통과 후 2014. 12. 4 공포·시행 예정)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공청회 개최 의무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조건 부과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4. 12. 4 시행 예정)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사업자단체’, ‘학술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단체의 자격기준(예: 방송사업자단체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역방송사가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을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을 제정(2014. 12. 4 시행 예정)하여 방송법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받거나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이나 이윤배당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받았거나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100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4)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교육·체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전국 각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해왔다. 이에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방송법」 제90조의2, 2014. 11. 29 시행).

#### 5) 기타

채널별로 음량이 다르게 송출되어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음량을 변경해야 하는 시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방송법」 제70조의2, 2014. 11. 29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입법 예고하고 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유료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였다(「방송법」 제77조, 2014. 11. 29 시행).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에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방송법」 제33조, 2014. 8. 29 시행),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

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방송법」 제69조, 2014. 8. 29 시행).

### 3. 주요 시행령 개정 사항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종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비해 강력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여 전체 방송구역 중 1/3 이상의 방송구역에서 경영할 수 없다는 규제를 삭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가구 1/3이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합산) 가입가구의 1/3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2014. 2. 5 시행).

#### 2) 지역민영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 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OBS, TJB 등 지역민방사업자들이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가 있는 달에는 중앙 지상파의 수중계 비율이 높아져 지역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판단 단위를 ‘월’에서 ‘분기’로 완화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014. 11. 29 시행).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비교〉

구분	MSO	위성	IPTV
개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방송구역 1/3</li> <li>■ 전국 SO 가구 수 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율 규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가구 수 1/3</li> </ul>
개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유료방송 가구 수 1/3</li> </ul>	(상 동)	(상 동)

### 3)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의무 운영시간 규제 폐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일일 15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치(幼稚) 사업이던 당시에 규정된 의무 운영시간 규제(일일 6시간 이상)를 폐지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 2014. 11. 29 시행).

정안이 마련된 후에도 충분히 조정안 수락/거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조정과정을 사전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제도를 형해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를 개정하여 조정불응제도를 폐지하였다(2014. 6. 24 시행).

## 4. 주요 행정규칙 개정 사항

### 1) 업무 소관 분리

2013. 3. 23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종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sup>6)</sup>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시행규칙』으로 이동하여 부령으로 상향입법하게 되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규정, 방송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등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전체 조문은 3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2014. 6. 24 동시 시행).

### 2) 방송분쟁조정 불응제도 폐지

기존 방송분쟁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이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35조의3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조

### 3) 국내 제작물 등 편성비율 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편성비율을 유연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2014. 6. 5 시행). 지상파DMB와 전문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물 최소 편성비율을 80%에서 60%로 완화하였다(고시 제3조). 또한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제작물의 전체 편성시간 중 1개 국가의 편성시간이 80%를 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1편의 영화나 대중음악만을 수입할 경우 무조건 편성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2편 또는 120분 이내로 수입물을 편성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80% 편성비율 제한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고시 제8조).

아울러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을 하는 채널의 경우 편성비율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편성비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시 제12조).

##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방송분야에서 근 2년간 이루어져 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6) 방통위는 부령 제정권한이 없어 고시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는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전과법이나 미디어법과 관련된 개정사항,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개정 사항은 제외하고 있어 모든 방송분야의 입법 동향을 포괄 하지는 못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한미FTA 시행을 위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등록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외국법인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이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방송공정성특별 위원회 논의 결과 법안에서 제외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등 개정안도 마찬가지 이다.

방송분야는 다양한 사업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제도 개선이 더디고 제한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09년 신문·방송 경영제한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한 이후 근 2년간 비교적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